

가상자산사업자  
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의 문제점

2021. 9. 27.

CHA & KWON

차·권 법률사무소

# 강연자 소개



## 권오훈 변호사

- 차앤권 법률사무소 파트너 변호사
- KSY인베스트먼트 이사
- 대한변호사협회 국제위원회 위원
- 서울변호사회 국제위원회 위원
- 과기정통부/NIPA 블록체인 규제개선 자문위원
- 스타트업 법률지원단 위원
- (전) 대한변호사협회 IT블록체인위원회 위원

[ohkwon@chakwon.com](mailto:ohkwon@chakwon.com)

02-3495-0957

#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수리 요건

- 현행 특금법 상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불수리 요건
  - ✓ ISMS 인증 획득
  - ✓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
    - 단, 가상자산과 금전의 교환 행위가 없는 경우 예외
  - ✓ 금융 관련 법률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자가 대표자 및 임원

#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수리 요건

- 실명확인 가능 입출금 계정
  - ✓ 동일 금융회사등에 개설된 가상자산사업자의 계좌와 그 가상자산사업자의 고객의 계좌 사이에서만 금융거래등을 허용하는 계정
  - ✓ 은행법에 따른 은행, 중소기업은행, 농협은행, 수협은행에 한정
    - 상당수 거래소는 고객이 맡긴 금전을 하나의 계좌에서 혼합 관리
    - 은행으로 하여금 고객별 가상계좌에 대해 실명확인을 받고, 개별고객 계좌와 거래소 계좌를 분별 관리하도록 하여 투자자 보호를 기하고자 하는 취지

# 현행 특금법에 따른 소비자 피해

-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63곳 중 ISMS 인증 사업자: 29개 업체
-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 제휴 사업자: 4개 업체
-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수리 사업자: 1개 업체
-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 거래소 외 사업자 예치 금액: 2조 3496억원 (221만명 규모)

→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 거래소가 아닌 거래소 소비자 피해가 예측됨

# 은행의 추가적인 의무

- 고객이 가상자산사업자인 경우

## ✓ 기본 확인 사항

- 고객 확인(Customer Due Diligence, CDD)
- 고액현금거래보고(Currency Transaction Report, CTR)
- 의심거래보고(Suspicious Transaction Report, STR)

# 은행의 추가적인 의무

- 고객이 가상자산사업자인 경우

## ✓ 추가 확인 사항

-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, 변경신고, 수리, 직권말소 사항
- 예치금을 고유재산과 구분 관리하는지 여부
- ISMS 인증 획득 여부

→ 변경신고 및 직권말소 사항 사유 발생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야 함

#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

-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개시 요건

1. 예치금을 고유재산과 구분 관리

2. ISMS 인증 획득

3. 고객별로 거래내역 분리 관리

4. 가상자산사업자의 절차 및 업무지침을 확인

→ 금융거래등에 내재된 AML CTF 위험 식별, 분석 평가

- 4를 조건으로 신고 수리 이후 금융거래 등이 이루어질 것을 조건으로 개시 가능

→ 가상자산사업자의 절차 및 업무지침을 확인하는 것의 의미 불분명

#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

- 은행연합회 가상자산사업자 자금세탁위험 평가방안

구분	목적	점검항목
법적요건	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고객확인 이행 (법 §5-2③) 및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개시 요건(영 §10-18) 점검	ISMS 인증 획득 여부
		금융관련법률 위반 이력
		예치금·고유재산 및 고객별 거래내역 구분·관리 여부
		다크코인 취급 여부
		FIU 신고 유효 여부
기타요건	가상자산사업자의 불법행위, 외부해킹 등으로 인해 사업연속성에 심각한 손상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 점검	부도, 회생, 영업정지 이력
		대표자 및 임직원의 횡령·사기 연루 이력
		외부해킹 발생이력
		신용등급
		당기순손실 지속 여부

# 가상자산사업자가 고객인 경우

- 은행을 포함한 금융기관등이 가상자산사업자를 고객으로 할 경우
  - ✓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는지
  - ✓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이후 변경 사유가 있는지
  - ✓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이후 직권 말소 사유가 있는지
  - ✓ 실명확인입출금계정 개시 시 금융거래등에 내재된 AML CTF 위험 지속적 식별, 분석 평가

→ 추가적인 AML 의무가 존재하는 반면, 의무의 내용 불명확

\* 가상자산사업자도 금융기관등에 해당.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사업자를 고객으로 할 경우 은행과 마찬가지로의 AML 의무가 존재하는 것으로 해석 가능.

# 가상자산사업자의 의무

-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수리 요건
  - ✓ ISMS /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 등
-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이후 금융거래 의무
  - ✓ CDD, STR, CTR 등
-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이후 특유 의무
  - ✓ 고객별 거래내역 분리 관리, 오더북 공유 금지, 다크코인 취급 금지 등

→ 가상자산 사업자에게도 금융거래 요건은 물론, 특유의 요건이 존재

→ 은행이 가상자산 사업자의 AML 활동 전반에 추가적인 의무를 지게 하는 것은 가혹

# 특금법 과태료 규정의 모호성

- 금융기관등이 CDD, STR 위반 시 과태료 규정 존재 (법 제5조의 2 제1항 제1호, 제2호)
  - 고객이 가상자산사업자인 경우 → 과태료 규정이 없음 (법 제5조의 2 제1항 제3호)
    - ✓ 단, 15조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시정명령을 내릴 수는 있음
    - ✓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15조에 따른 시정명령이 치명적
- 조문 해석이 모호하여, 금융기관은 적극적인 해석에 소극적일 수 밖에 없음

# 특금법 개정 방향성

- 실명계좌 요건 변경

- ✓ 실명계좌를 신고 불수리 요건에서 삭제

- ✓ 신고 수리 후 금융거래 요건으로 변경

→ 은행이 신고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으로부터 해방

→ 가상자산사업자 폐업 및 투자자 피해 방지

# 특금법 개정 방향성

- 실명계좌 발급 거부 최소화

- ✓ 은행이 실명계좌 발급 거부 시 거부사유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교부

- 가상자산사업자의 절차 예측 가능성 향상

- 가상자산사업자가 고객일 경우의 의무 완화

- ✓ 가상자산사업자 자체의 의무 명확화

- ✓ 가상자산사업자가 고객일 경우에도 다른 금융회사등에 준하여 AML 의무 부여

- 현행 특금법 상 모호성 제거

감사합니다.

CHA & KWON

차·권 법률사무소

※ 본 자료는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제작된 것으로 법률적인 자문이나 홍보를 위한 것은 아닙니다. 본 자료에서 취득한 정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여 직·간접적으로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차앤권법률사무소는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아니하며, 이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기반하여 조치를 취하시기에 앞서 반드시 저희 사무소에 법률적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.